

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따라서 예컨대, 공인의 사생활이나 초상, 성명 등은 국민의 알권리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나 내밀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공인이라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비밀영역이나 사적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의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할 것이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의 공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³⁷⁾

三. 피해의 구제

언론에 의한 피해의 구제로는 민사적인 것 외에도 형사적인 것(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신용훼손죄 등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제라 하기보다는 제재라 함이 타당하므로, 여기서는 민사적인 것만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민사적인 구제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4조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에 의한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법규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금지청구권 등이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은 모두 사후적 구제수단이나, 금지청구권만은 사전적 구제수단에 적합하므로 법원에 본안을 청구하기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는 필요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고, 법원에 대한 청구는 본안이 아니라 가처분에 유사한 신청사건에 준하여 처리된다.

1. 손해배상청구권

37) 하급심 판례 중에는, 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5. 9. 27.자 95카합3438 결정), ② “공적관심의 대상이 되는 저명한 인물 즉 공적인물에 대한 서술, 평가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공적인물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애에서의 주요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더하여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인물(이 사안에서는 야구선수인 박찬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경우(서울고등법원 1998. 9. 29.자 98라35 결정) 등이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재산적 손해

언론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은 대부분 위자료의 지급일 것이나, 피해자 경영의 사업의 영업부진 또는 파산, 광고모델계약의 취소로 인한 모델료 상당의 수입상실 등 처럼 언론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³⁸⁾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고,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실무에서 인정된 예가 그리 많지 않다.³⁹⁾

2. 정신적 손해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하는데 별 장애는 없다.⁴⁰⁾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연인이면 성별, 연령, 지위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유아나 정신병자와 같이 현실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위자료가 단지 감각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실된 정신적 이익의 회복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하여서도 유족이 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의 감정을 훼손한 경우라면 위자료의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법인도 단체의 명칭을 전유할 권리나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한다.

38) 대법원 판례 중에는 “비방 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 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한 것이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39) 일본에서 판례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는 거의 변호사 비용에 관한 것이라 한다(竹田 稔, 「名譽・プライバシー侵害に關する民事訴訟の研究」, 酒井書店(1983), 169面 이하).

40)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253 BGB),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신체, 건강, 자유 및 정조의 침해가 있는 때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되었으므로(§ 847 BGB), 언론에 의하여 명예나 일반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으나, 연방대법원 1958. 2. 1. 판결(BGHZ 26, 349)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는 독일 민법 제847조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처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일종이라는 견해(배상설)와 과거의 잘못과 앞으로의 시정을 위한 제재로서의 성격도 포함한다는 견해(제재설)가 있으나, 우리 통설은 위자료를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위자료에는 어느 정도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성격도 있음을 시사하였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위자료의 액수는 여러 나라에 따라 일정치 않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의 개념이 발달하여 위자료의 액수가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평균적으로 220만 달러에 이르는 등 고액에 달한다 하나, 독일의 경우는 평균 1만 마르크(약 500만원) 정도가 보통이고(최저 2,500, 최고 5만 마르크), 일본의 경우도 1990년 이후 평균이 150만 엔에 불과하여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⁴¹⁾ 우리 법원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통 1,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인정해왔으나, 최근 위자료의 액수가 점차 늘어 근래에는 1억원 이상의 배상을 명한 사례도 여러 있다.⁴²⁾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로는 ① 보도의 내용과 크기, 게재경위와 목적, 진실성, 공익성, 비방의 정도, 사회적 영향력 등 보도와 관련된 사항과 ②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등 피해자측 사정 외에 ③ 신문, 잡지의 발행부수, 공신력, 독자의 구성, 회사의 규모, 재산, 재정상태 등 가해자측 사정 및 ④ 정정·취소의 보도가 있었는지, 손해배상 외에 다른 처분도 명하여졌는지 등 보도 후의 정황도 고려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도 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⁴³⁾

41)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위자료, 청구법률논단 1집, 충북법률실무연구회, 110쪽 이하 참조.

42) 이러한 위자료의 고액화는, 사회광고의 위헌결정 후 위자료가 언론침해에 대한 거의 유일한 실효적 구제수단이라는 인식의 형성과 함께 언론기관의 거대·독점화, 언론의 상업·선정주의에 대한 법원의 통제의 필요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영향 등 다각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서 사망에 대한 위자료가 4,00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는 없다.

43)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 보도나 반박 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 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이 점도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II.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금전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불충분하므로 이러한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상회복처분을 명하도록 한 것이다.

1. 사죄광고

언론피해의 구제로서 종래 대표적으로 이용되어왔던 것이 ‘사죄광고’였다. 사죄광고는 통상 신문, 잡지 등에 게재 장소와 함께 활자의 크기를 지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가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로는 ‘명예훼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죄광고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2. 정정보도

‘정정보도’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보도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를 같은 보도매체 혹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알림으로써 명예회복을 기대하는 처분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위 사죄광고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사죄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원문 기사의 취소광고,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유죄판결문의 게재,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 손해배상판결문의 게재 등을 들었으나, 실무에서는 정정보도의 원상회복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⁴⁴⁾

44) 그밖에 원상회복의 수단으로서 독일에서는 ① 취소(Wiederruf), ② 철회(Rücknahme), ③ 바로잡음(Richtigstellung), ④ 해명(Klarstellung), ⑤ 불고수(Nichtaufrechterhalten), ⑥ 보충(ergänzende Darstellung), ⑦ 제3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표명(Stellungnahme zur Behauptungen Dritter), ⑧ 잠정적 표명(einstweilige Erklärung), ⑨ 패소사실의 공고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다(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1997), 197-200쪽).

보통은, ① 원문 기사의 내용이 전부 잘못되어 취소하는 경우(die volle Wiederruf), ② 일부에 관해서만 바로잡는다거나 보충하는 경우(die eingeschränkte Wiederruf), ③ 원문 기사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을 지는 몰라도 당분간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의 표명(die vorläufige Wiederruf), ④ 원문 기사가 편집부의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의 표명(Distanzierung)

정정보도는 보통 이전 보도에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그것을 바로 잡는 내용과 아울러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된 정정보도문을 당해 보도매체를 통하여 1회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한다.⁴⁵⁾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89조에 의한 간접강제⁴⁶⁾를 명할 필요가 있다.

III. 금지청구

명예 기타 인격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비록 명시적 법규정은 없으나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금지청구권은 ① 침해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사전억제의 수단으로서 방해예방청구권과 ② 침해가 일부 실현되었으나 재발·계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방해정지(중지)·배제(제거)청구권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금지청구권은 통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될 수 있으나 피해발생 또는 확대의 사전예방이라는 청구권의 성격상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명예 기타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고 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구제보다는 그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권리의 사전구제수단이란 점에서 금지청구권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권

등 4가지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Damm/Kuner, Widerruf, Unterlassung und Schadensersatz in Presse und Rundfunk, C.H.Beck(1991), RN 289 ff.

45) 정정보도를 명한 예를 보면, 일간 신문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모 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모 일보(위 피고 발행 신문임)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2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제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1회 게재하라”는 예가 있고(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77460 판결), 방송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21:00 ‘모 뉴스’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순서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모 회사 직원들의 비리 보도에 관하여’라는 부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제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함께 뉴스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예가 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 2. 10. 선고 99카합2941 판결). 정정보도문으로는, “정정보도문, 모 일보는 1999. 7. 31.자 신문에 ‘검찰의 감청 의혹’ 또는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 (중략) … 휴대폰 통화를 불법 감청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중략)…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였다거나 감청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 신문을 제작·발행하는 피고 신문사는 법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끝.”이라는 형태가 사용될 수 있다.

46) 일정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여 일정한 금액의 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만큼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지청구권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언론의 사전억제와 같으므로 위헌의 시비가 일 수 있다.⁴⁷⁾

금지청구권의 행사방법은 침해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부작위청구에 의하고,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기사의 경우에는 기사의 게재중지, 기사가 게재된 잡지의 발매·배포의 금지 또는 정지 등이 생각될 수 있으며, 사진촬영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필름의 파기나 사용금지 등이 생각될 수 있다. 그 외 가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서, 필름 등을 집달관에게 보관을 명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방영금지가처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언론기관인 방송국이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 방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그 방송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통 사전금지청구의 경우 신문, 잡지가 어느 정도 출판, 배포된 후 그 내용을 알게 된 피해자가 그 추가 발행의 금지 및 배포된 잡지 등의 회수를 청구하는데 반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은 그 내용이 방송되기 전에 미리 그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특징이 있으므로, 언론의 사전검열금지와 관련하여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⁴⁸⁾

금지청구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의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위 간접강제신청은 채무명의를 성립한 후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금지청구를 구하는 판결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IV. 반론보도청구권

1. 의의 및 성격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

47) 따라서, 일본과 우리 나라의 학설로는 금지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고도의 위법성설, 비교형량설, 개별적요건인정설, 절충설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학설의 자세한 내용은 김오수, 언론에 의한 피해보상 형태 -언론침해에 의한 구제제도-, 언론중재 3권 1호, 언론중재위원회, 40, 41쪽; 허만, 언론보도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민사판례연구 XXI, 박영사, 699쪽 참조), 결국은 명예 기타 인격권 등 개인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8) 방영금지가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언론의 사전검열금지(헌법 제21조 제2항)와 관련하여 위헌의 논의도 있는 듯하나, 이를 위헌이라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0. 4. 20. 결정 99카956 결정; 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9헌가1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96헌가23결정 등 참조).

를 받은 자가 그 사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정기간행물 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방송법 제91조).⁴⁹⁾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다. 즉, 반론 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⁵⁰⁾

2. 행사의 요건

가.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다. 방송·보도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해 권리능력이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예컨대 학교, 병원, 유치원 등)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 방송법 제91조 제7항).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언론보도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직접적으로 명기되는 경우(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9 선고 89카52256 판결)는 물론이고, 비록 P노회, K목사, C씨 등 성명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이니셜로만 지칭하였거나(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7. 29. 선고 90카41568 판결), 노씨, 최모, 진양 등 성씨만 지칭하고 이름은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춘천지방법원 1989. 11. 3. 선고 88카1616 판결), 나아가 가명을 사용하여 보도하거나(서울지방법원 1996. 1. 25.자 95카기5816) 성명이 다르게 보도되었더라도(서울고등법원 1987. 3. 18. 선고 86나4096 판결),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 또는 그 기사에 관심 있는

49) 구 종합유선방송법 제41조에서도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이 규정되었으나,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포함되게 되어, 위 종합유선방송법은 2000. 1. 12. 법률 제5926호로 폐지되었다.

50) 반론보도청구권은 뒤에 나오는 추후보도청구권과 함께 보도매체접근이용권(악세스권)의 일종이다.

독자라면 이를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을 때(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9. 3. 선고 82카 18633 판결; 같은 법원 1984. 11. 30. 선고 84카35089 판결), 또는 신청인을 알거나 종전의 관계 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보도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7.자 94카기3509 결정)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⁵¹⁾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다.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따라서 연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가 제한적, 한시적인 것도 정기간행물이 될 수 있고(예를 들어 올림픽 기간 동안만 발행하는 경우), 대외적인 것이 아니라 대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표된 후에는 그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을 말한다(방송법 제2조 제1호).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은 단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고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적 주장이며 의견표현, 가치판단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사실주장과 의견, 논평 등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가 모호하므로, 일단 그 형식(예컨대 사실과 칼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의견과 사실 중 어느 것이 전면에서 서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고 일반 독자의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사실적 주장이 담겨있는 한 편집 형식이나 공표 방법 등 보도 형태와 상관없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건·사고기사 외에 통신사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에도 반론보도청구권은

51) 대법원은, 비록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 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 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인정된다. 외부인사의 청탁에 의한 보도물이나 기고물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사가 고소장 또는 진술서의 내용, 경찰수사기록, 공소장, 다른 기관의 공문 등을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라도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보도한 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문자로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이 아닌 만화나 사진의 경우에도 사실적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됨은 당연하나, 만화의 경우에는 만화가의 주관적 시각을 과장하여 희화적,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기법에 있어서 과장·단순화·왜곡·비유·비난의 방법이 동원되는 까닭에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광고는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30. 선고 84카34374 판결; 같은 법원 1984. 11. 30. 선고 84카34375 판결).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 기사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6항, 방송법 제91조 제6항). 또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⁵²⁾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⁵³⁾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와 방송법 제91조 제3항 단서).

3. 행사

반론보도청구권은 서면으로 행사하여야 하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방송법 제91조 제2항).

52) 예컨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53) 반론보도문의 주장내용이 일반적인 경험 사실이나 기타 신문, 방송, 이미 공표된 연구 결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는 경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6. 선고 93카합792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0. 8. 선고 92가합16462 판결).

반론보도청구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피해자가 언론사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할 수 있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1항), 언론사 등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고 같은 기간 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언론사 등에 대한 직접 청구 후 언론사 등과 협의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14일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법원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과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직권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언론사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할 수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1심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반론보도청구의 소에는 그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또 동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수인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주관적 병합의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정기간행물이 청구인에 대한 보도를 수 차례 하였음을 이유로 수 개의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객관적 병합형태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2조 제4항).

반론보도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반론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반론보도문의 길이에 관하여 법은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5항). 그러나, 글자 수에 따른 수적인 기준만으로 반론문의 분량을 규제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부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반론에 있어서는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문보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복하여야 하며, 특히 이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실관계를 보충하

여 설명하려면 반론보도문은 필연적으로 원문보도보다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적인 기준에 따른 반론보도문의 크기제한규정은 반론보도문이 원문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반론보도문이 원문보도에 대한 반대사실, 보충적 진술 및 간결한 증거 등의 기재로 구성된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크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예컨대 타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공연 음란, 반국가단체찬양 등의 내용과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방송법 제91조 제4항).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사실적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보다는 필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과 주관적인 반박비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0.자 91카81540 결정). 반론보도문은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뿐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할 수 있다.

V. 추후보도청구권

정기간행물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방송법 제91조 제8항).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범죄 피의사실 보도로 인하여 침해된 피의자의 인격권을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인정되는 특수한 유형의 반론권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로서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자이다.

범죄의 혐의라 함은 형법 기타 특별법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하고, 형사상의 조치라 함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 등 일체의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상의 공권력 작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있는 후에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 등으로 밝혀진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과 검사의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의 결정과 같이 형식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후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 (끝).